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4년 2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4년 2월 2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의택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마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“1,274명”에서 “1,300명”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을 “1,245명”에서 “1,271명”으로 증원(안 제2조)

< 증 원 내 역 >

구분	총계	사회복지인력		세무인력 (소득세전환)	안 전 인 력	주요현안사업			비고
		연차적 순 증	맞춤형 복 지			행정	토목	건축	
인 원	26	3	5	5	1	10	1	1	

- 2)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“5급” 1명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이진표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.12.31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「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」와 「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 대책」, 「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확충 계획」 등 정부시책에 의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 등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의 인건비 편성액은 안전행정부에서 책정한 2014년도 마포구 총액인건비 1,045억 7,895만 5천원 대비 91.48%인 956억 7,568만 3천원으로, 8.52%에 해당하는 89억 327만 2천원내에서 증원이 가능함.
- 이에 따라 기준인력 대비 부족한 13명을 최근 신설되었거나 신설 예정중인 팀에 대한 정원으로 증원하고,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8명,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5명을 증원하는 등 총 26명을 증원함으로써 마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 1,274명에서 1,3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,245명에서 1,271명으로 조정하며,
-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중 “5급” 1명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(안 부칙 제2조),
-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와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,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도 총액인건비에 전액 확보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